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7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마약범죄 수사협조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 신설	3

I. 개요

1.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5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은정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8. 13.
- (3) 회 부 일 : 2026. 8.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범죄는 국제적 조직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로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내부 협조자(정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 공급망 차단과 조직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협조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협조자 관리가 개별 수사관의 관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마약범죄 등과 관련하여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마약범죄 수사협조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 검거활동에 협조한 경우 법원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0조(형의 감면) ①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2.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를 한 경우 3.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 검거활동에 협조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마약범죄는 공급책·유통책·판매책 등이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고 비대면 방식(소위 ‘던지기’)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조직의 내부 사정이나 유통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과 정보가 상선 또는 조직 총책을 검거하고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수사에 협조하는 마약사범에게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협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수사협조를 유도하려는 취지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형벌감면 및 양형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별도의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형법」 제52조¹⁾는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를 감면사유로 규정한 부분은 현행 「형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²⁾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자수와 수사·재판절차에서의 협조에 따른 형벌감면을 함께 규정한 입법례도 있으므로, 개정안은 마약범죄에 대한 감면 가능성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1)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또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특정범죄’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가 포함되고, 여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가 포함됨. 같은 법 제16조³⁾는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범죄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마약범죄 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가 현행법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감면규정은 범죄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자신의 관련 범죄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적용되는 반면, 개정안은 이미 범죄가 적발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후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이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아울러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 이에 미치지 않는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수사협조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범위 자체를 변경하는 법률상 감면사유가 아닌 반면, 개정안은 법률상 형 감경뿐만 아니라 형의 면제까지 허용한다는 차이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마약범죄의 은밀성과 조직적 특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과 정보 확보가 중요하고, 현행 양형상 참작만으로는 충분한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형벌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은 이미 범죄가 적발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사협조에 대해서도 법률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조를 유도하려는 의미가 있음. 따라서 현행 형벌감면 및 양형제도와의 관계, 유사 입법례 및 마약범죄 수사에서 내부가담자의 협조를 확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상 감면규정 신설과 형의 면제 허용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실질적인 입법효과는 주로 이미 범죄가 적발된 자가 이후 다른 사람의 범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한 경우 법률상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상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형의 면제까지 허용할 필요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마약범죄의 증거 확보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부 협조자를 통해 조직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찰청) 마약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어 외부인의 증거 확보가 극히 어렵고, 가담자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첩보 수집,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공조와 사법협조자(정보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내부가담자의 진술 확보를 통한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효과적 수사 방법임.
- 그간 협조자 관리는 관행적으로 수사관 개개인에게 맡겨져 불법행위 등 위험 관리에 취약하였음.⁴⁾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 도입(2027. 5. 27. 시행)에 따라 공급원 차단과 총책 검거를 위한 협조자 활용이 필요함.
- 「형법」 제52조 자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마약류사범이 먼저 자수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어, 마약류관리법에 자수에 대한 임의적 감면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법협조자의 예측가능성 및 협조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다른 법

4) 재판 중인 상당수 마약류사범은 딱히 제보할 만한 사건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제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일부 경찰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3자가 제보하더라도 해당 마약류사범의 공적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음. 결국 수사 경찰관은 야당 등 제3자가 제보하였을 뿐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보내용을 마치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제보하여 ‘수사협조’한 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사공적서’를 작성하여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처벌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단825 판결 등)

를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²⁵⁾ 역시 자수에 대한 임의적 감면 별도로 규정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사전”에 “타인 범죄의 신고”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미 범죄가 적발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후 다른 사람의 범죄 규명이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 따라서 내부가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마약 조직 범죄에 있어 범죄규명에 필수적인 단서 및 증언을 원활하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량에 따른 양형 참작으로서 법률상 명문으로 감면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와 본질적 차이가 있음.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면 처단형 하한이 기준이 되므로, 법률상 감경이 없는 경우 양형인자가 있더라도 권고형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움⁶⁾. 또한 법원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실제 협조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움⁷⁾.

□ 형의 면제까지 규정하면 중대한 마약범죄 규명에 기여할 유인을 높일 수 있음. 단순한 감경만으로는 내부고발자가 고발 대상과 함

5)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설(형종 및 형량 기준 - 형량범위의 결정) 中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불일치 조정에 대한 내용 참고

7) 대법원 양형위원회 발간 양형기준에 의하면, 마약류 범죄의 ‘특별감경요소’로 하나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수사협조’라 함은 ①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 마약류의 양, 횟수, 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② 매매·알선등 유형의 각 제4유형(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수출입·제조등 유형의 제4유형(영리목적 또는 상습범)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 4유형(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노1231 판결 등)

께 형을 집행받으며 자신의 안위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움.

- 형의 감경·면제 여부는 법관이 협조자 본인의 범행 중대성과 수사 및 공공 안전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므로, 형의 면제를 허용하더라도 기망·남용 가능성은 극히 적음. 사법경찰관의 의견 제출을 통해 구체적인 협조 내용을 법원에 알릴 수 있어 적정성과 협조 유인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마약조직 상선을 검거하고 공급원을 차단하여 공공 안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범협조자에게 형의 면제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의견 등 객관적 자료와 법관의 판단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